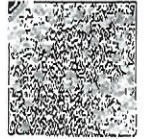


함께 되는 평생 친구, 보건복지부



보건복지부

보다 나은 정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시행 예정 알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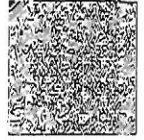
1. 약무정책과-2185('18. 5. 1.)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.
2. 우리부는 '18.4.25. 자 「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」 (보건복지부 고시)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. 동 개정고시의 시행일('18.7.25.)이 다가옴에 따라,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의 약국개설자가 처방전에 의하여 판매해야 하는 품목 지정 등 동 개정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니,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 및 의료기관 등이 개정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귀 회원(사)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< 주요 내용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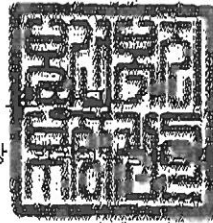
-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의 약국개설자가 처방전에 의하여 판매해야 하는 품목 지정
 -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개설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판매하여야 하는 품목을 「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) 별표에 따른 분류번호 241번 부터 249번까지에 해당(호르몬제)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정함.
 - *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(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-705호, 2017. 12. 5.) 제44조제3항제2호 내용과 관련된 내용임
-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약국, 의료기관 등의 관리 체계 개선
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확인증 교부 회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,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약국 등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의약품 도매상 등이 해당 약국 등에 공급한 의약품의 명칭, 수량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.

- 붙임 1.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.
 2. 개정고시 전문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76호) 1부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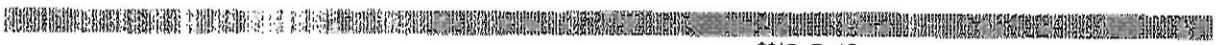




보건복지



수신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,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, 대한약사회 회장,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, 대한약사회장, 대한한약사회장, 대한의사협회장



주무관 원정우 기술서기관 김정연 약무정책과장 윤병철 2018. 7. 16.

협조자

시행 약무정책과-3334 (2018. 7. 16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정부세종청사 10동 보 / http://www.mohw.go.kr
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약무정책과

전화번호 044-202-2491 팩스번호 044-202-3927 / jwwon3595@korea.kr / 대한민국 공개

위험합 뎨 119, 힘겨울 뎨 129